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64
----------	-------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정동만 · 김선교 · 김성원
김은혜 · 김정재 · 서천호
김민전 · 김재섭 · 엄태영
강명구 · 박성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취업 또는 근로 제공 사실을 숨기거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어 지급제한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직급여 지급제한의 적용 기준을 10년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 이상이었던 것을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그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반복적인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61조제5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항 중 “10년간 3회 이상”을 “10년간 2회 이상”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적인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 ~ ④ (생략)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u>10년간 3회 이상</u>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u>3년</u> 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 ----- ----- ----- ----- ----- <u>10년간 2회 이상</u> ----- ----- ----- ----- ----- ----- <u>5년</u> ----- ----- -----.